

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9. 15.
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기후환경과장)
- 제출일자: 2023. 9. 1.
- 회부일자: 2023. 9. 1.
- 상정 및 의결: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(2023. 9. 15.)

2. 제안이유

-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. 12. 31.자로 만료되어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
- 상위법령명, 용어 수정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16조의2)
- 상위법령명, 용어 수정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(안 전반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- 입법예고(2023. 8. 1. ~ 2023. 8. 21.): 의견없음
- 행정규제 심사결과: 의견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
○ 조례·규칙 심의결과: 원안 가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명, 일부 용어 수정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.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안 제2조에서 “혹은” 을 “또는” 으로 변경하고
 - 안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” 를 “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” 로 법령명을 수정하였으며,
 - 안 제16조의2에서는 “2023년 12월 31일” 을 “2028년 12월 31일” 로 변경하여 지하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 하였고,
 -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“부담금을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” 를 “부담금을 「지방행정체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” 로 변경하였으며,
 - 제6장(제30조)을 삭제하였음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명, 용어 수정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한 사항 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